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924호 2015년 3월 3일(화)

조 례

○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2
○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3

회 람									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3월 3일

속 초 시 장 인

속초시 조례 제2391호

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중 “제2차 정례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

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로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함.

속초시 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3월 3일

속 초 시 장 인

속초시 조례 제2392호

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,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

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

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로 실시시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례회 회기 일수를 조정하고자 함.